의 · 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공고 제2021-3호

응시생유의사항

1. 검사 일시 : 2021. 8. 15(일) 09:00 ~ 12:00

2. 검사 장소

지 역	수 험 번 호	검 사 장 소	검 사 장 주 소		
서 울 (강남)	6090001~6090320	서초고등학교	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29		
	6090321~6090640	신천중학교	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		
	6090641~6090936	잠신고등학교	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4		
서 울 (강북)	6190001~6190324	덕수고등학교	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		
부 산	6290001~6290222	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	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		
광 주	6590001~6590154	전남대학교 진리관	광주시 북구 용봉로 77		

- ※ 검사 당일 검사장에 부착된 "검사실 배치표"를 확인하여 본인의 검사실에 입실, 해당좌석 에 착석(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수험번호별 검사실은 미리 통지하지 않음).
-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대학교 건물의 경우 정문과 거리가 멀 수 있으니, 입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가격리자 검사장은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.

<주차장 이용 안내>

- 1. 중/고등학교 검사장(서울 전체 검사장 해당): 주차 불가
- 2. 부산대학교: 무료 주차, <u>북문/무지개문 사용 가능(12시~14시에만 수험표 제시</u>가능), 정문은 공사로 인해 통행불가.
- 2. 전남대학교: 무료 주차, 수험표 제시.

3. 검사 시간표

교시	영역	입 실	문답지배부	검사 시간	비고	
제1교시	자연과학 I	08:30	08:55	09:00-10:15 (75분)	의학/치의학	
제2교시	자연과학 II	10:35	10:40	10:45-12:00 (75분)	(공통)	

* 검사 개시 및 종료는 타종에 의함.

4. 코로나-19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항 안내

가. 응시자 일반 사항

- 코로나-19 바이러스 감염증(이하 '코로나-19') 대응을 위해 수험생 안전 수칙을 공지하오니, 응시자와 검사장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, 발열검사와 손소독/손세정제 사용을 준수하여 주기 바람.
- 일반 검사장 출입구 단일화 및 외부인 출입 통제(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포함)
- ∘ 발열 검사 총 3단계 실시[1차-열화상, 2차-비접촉 체온계, 3차-고막 체온계 (37.5도 이상 의사자만 해당)]

<2021학년도 검사장 출입구 예시>







- · <u>코로나-19 방역을 위해 발열검사(1차/2차)를 진행하기에,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</u> 하여 입실하여야 함.
- 체온 측정 시 의사자, 검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검사실에서 시험 을 실시하며, 문진표 징구, 검사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른 절차 이행.
- ·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검사 전/후, 필요시 검사중에도 환기를 실시할 수 있으니, 많은 양해 바람.
- ·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,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배정된 일반 검사장에서 응시 불가함.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법적 처벌 가능.

- 나. 코로나-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안내
- 1) 응시 요건
- 확진자는 응시 불가.
-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(첨부1), 외출 허가 등 서류 제출, 검사장소까지 이동 제한이 없는 경우 응시 가능.
 - 신청서 및 서류 제출기한: 2021년 8월 11일(수) 낮 12시
 - 제출 방법(협의회 전자우편): www.mdeet.org@gmail.com
 -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응시 가능
 -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며, **첨부4 참고**.
- 자가격리자의 별도 시험장 응시 신청서를 제출 기한에 완료하였다 하더라도,
 ①관련 기관의 협조가 어렵고, ②응시자가 시험장소로 이동이 불가, ③응시자 본인의 건강
 악화, ④협의회 시험 운영의 위험성 및 불가항력 상황, ⑤기타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응시불가할 수 있음.
-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내 검사실에는 녹화장치로 시험 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. 시험의
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조치.

2) 공통 사항

- 확진자,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응시 미신청자 중 <u>백지답안 처리 신청자</u>에게는 응 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을 제공함. 단, 응시료 환불은 불가(첨부2 제출)
 -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: 2021년 8월 14일(토) 오후 6시.
 - 제출 방법(협의회 전자우편): www.mdeet.org@gmail.com
- 확진자, 자가격리자 **별도시험장응시/백지답안처리 미신청자**는 **응시료 전액 환불**처 리함(첨부3 제출)
-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, 제출 방법은 위와 동일함.
-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전국 1개소만 운영(경기도 소재)
- 코로나-19 확진 및 자가격리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에 임할 경우,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.

3) 응시자 대응 절차

- ① 자가격리 통보 확인 후, 본 협의회와 본인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에게 시험 응시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함.
- ② 위 응시요건에 안내한 기한 내 별도시험장응시신청서(첨부1) 제출하여야 함.
 - 신청서, 자가격리자 통지서, 코로나-19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, 외출허가증.
 - 이메일 전송 후 협의회로 유선 연락 필수.
- ③ 협의회에서 관련 사항 확인 후, 별도 시험장소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.

※ 첨부: 「코로나-19」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전 수칙 안내문 등

5. 검사실 입실 시간 엄수

- 응시생은 검사 당일 08:30까지 해당검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야 함.
- · 검사 시작 후에는 검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.

6. 신분증 소지

- · 출력한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거소번호증, 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)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확인 시 제시하여야 함.
 - ※ 신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함(신분증보완서약서 작성자 제외).

7. 응시생 유의 사항 숙독

∘ 답안 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"응시생 유의 사항"을 숙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함(퇴실 시 문제지 지참 가능).

8. 2017학년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부터 변경된 사항 안내

-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음(문제지 지참하여 퇴실 가능).
- · 개인필기구 지참가능. 단, 검사 시 책상에는 컴퓨터용수성사인펜,샤프펜슬,샤프심, 지우개,수정테이프만 소지 가능(그 외 필기구 휴대 불가).
- 협의회에서 지급하던 샤프펜슬,지우개는 지급하지 않음.
- 기존처럼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은 개별 지급되며, 수정테이프는 검사실별로 비치함.

9.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

<반입 금지물품〉

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워치, 전자시계(결제·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), 무선호출기, 무전기, 블루투스 이어폰, 디지털 카메라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워크맨, 노트북 컴퓨터, 태블릿PC, 전자 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, 각종 정보화기기, 정보저장장치,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.

※검사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검사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(미제출 시 부정행위 간주, 검사실 밖으로 반출)해야 하며 검사종료 후 되돌려 받음.

〈휴대 가능물품〉

신분증, 수험표, 컴퓨터용수성사인펜, 아날로그 시계(결제·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 시계 사용 불가: 스톱워치, 수험용 시계 포함), 개인필기구, 마스크(감독관확인) 등.

※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이용한 부정 행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휴대 가능 여부 결정(예 : 돋보기).

10. 검사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

- 검사 감독관의 검사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검사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.
- ※ 결제·계산·통신기능 등이 있는 시계(스마트시계 등) 및 소리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이 불가함.

11. 답안은 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

-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.
- 답안지 성명란에는 '정자'로 또박또박 성명을 기입하여야 함.

12.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

-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한 수정 테이프 또는 응시생이 지참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답을 표기하여야 함.
-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.

∘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.

13. 부정행위 엄금

•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시 퇴장시 김과 동시에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.

14. 부정행위의 정의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

-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- 검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.
-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.
- 검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반출하지 않은 행위.
- 검사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,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 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.
-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.
- 당해 검사 무효 및 이듬해에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-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.
-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.
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.
-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.
-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.
- 민·형사상 조치 및 당해검사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검사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 - 사전에 조직적·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.
 -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(MDEET) 성적표를 의학/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/치과 대학, 기타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에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.
 - 대리 검사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한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.

15. 검사 중 퇴실 불허

• 응시생은 검사 도중에 퇴실할 수 없음.

16. 기타 유의 사항

- 검사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검사장내에서는 일체 "금연"임.
- 검사 중 타 응시생에게 방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.
- 검사장소 주차(중/고등학교 검사장)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람.
- 검사장 관리를 위해 개인 쓰레기는 되가져가기.

※ 응시생이 꼭 지켜야할 사항

- ·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거소번호증, 재외국민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만 인정하므로 이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미리 재발급을 받아 검사 당일 지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-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/거소증/재외국민주민등록 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본인확인 후 사본은 제출해야 함.

「코로나-19」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전 수칙 안내문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의 · 치의학교육입문검사 (MDEET) 검사 당일 외부인의 검사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

검사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검사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1. (출입금지)

-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. 마스크 미착용자 일반검사장 출입 금지
- 응시자 외 가족, 친지 등 외부인 출입 금지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일반검사 장에서 응시 불가
- 2. (입실시간 관리) 발열 검사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요망
- 3. (거리유지) 발열 체크 대기 시 수험자간 일정 거리 유지, 입실 이후도 동일
- 4. (발열 검사) 발열 검사는 열화상카메라. 비접촉체온계 등 실시
- 5. (손소독 실시) 발열 검사(1차-출입구) 전 손소독제 반드시 사용, 검사실 입실 전 2차 손소독 실시

6. (응시자)

- (마스크 착용)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코와 입을 가림, 검사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, 검사 실시 후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 협조, 검사 중 마스크 미착용[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행위(지속/반복) 포함]시 퇴실 조치할 수 있음
- 수험자간 불필요한 대화 금지
- 검사장 내 개인 이동 동선 최소화, 흡연 및 침뱉기 금지
- 문제지/답안지 이외 검사장 및 검사실 내 물건 접촉 금지(최소화)
- 손소독제 미사용 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
-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개인이 사용한 물품(휴지, 빈음료통, 사용한 마스크 등)은 검사장에 버리지 말고, 되

가져가기

- 검사 종료 후 수험번호(또는 층별) 순으로 퇴실(안전거리 유지를 위함), 퇴실 시 손소 독제 사용 후 귀가
- 검사일로부터 14일간 발열.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(1339) 또는 보건소로 문의.

7. (유증상자)

- 발열검사(열화상, 비접촉, 고막)에서 37.5°C이상일 경우 예비검사실에서 검사 실시(인 솔요원이 안내. 관할 보건소에 신고 검사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)
- 검사 도중이라도 발열 및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경우 감독관 또는 관리요원에게 알리기
- 8. (검사실 환기) 검사실 안전 관리를 위해 검사전, 검사중 및 쉬는 시간에 창문 등을 개 방하여 환기를 실시할 수 있음. 환기 시 더위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-19 예 방관리를 위해 양해를 부탁합니다.





기침함 만 옷소매로 가리기!







「코로나-19」예방 수칙 안내문







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|억해야 할행동:

국민 예방수칙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



기침이나 재채기함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특히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



발열, 호흡기 중상자와의 접촉 피하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



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유증상자* 메방수칙

*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품 등) 이 나타난 사람



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



3~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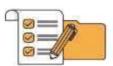


33°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중상이 심해할 경우 콜센터(251339, 지역번호+120),

관합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



외출,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

• 코르나바이건스강영등-19 점보는 (코르)18 공세하기 ncov.mohw.go.kr 🔾 에서 확인하세요!

발명일: 2020. 2. 25

「코로나-19」 감염병 예방 수칙





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

<mark>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</mark>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

코로나-19(COVID-19)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응시 신청서

◎ 성명 :	◎ 생년월일 :				
◎ 수험번호 :					
◎ 연락처(본인) :					
◎ 비상연락처(성명-관계 포함) :					
◎ 관할(담당)보건소 직원 성명 및 역	연락처 :				
◎ 자가격리장소(상세 주소) :					
상기 본인은 코로나-19 자가격리자로서, (사)의・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가 정하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 응시함을 신청합니다.					
첨부: 1. 자가격리자 통지서(관할 보 2. 코로나-19 검사 음성 판정 3. 외출 허가증 1부 끝.	, .				
2021	1년 8월 일				
신청인:	(서명)				
(사)의・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이사장 귀하					

코로나-19(COVID-19)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(별도시험장 미신청) 백지 답안 처리 신청(서약)서

◎ 성명 :					
◎ 생년월일 :					
◎ 수험번호 :					
◎ 연락처 :					
상기 본인은 코로나-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로서,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백지 답안 처리를 신청(서약)합니다. 그리고 응시료 환불처리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					
첨부: 1. 확진자 증빙 서류(시험일 기준, 퇴원 여부확인) 1부 2. 자가격리자 통지서(관할 보건소 발행, 기한 포함) 1부					
2021년 8월 일					
신청인: (서명)					
(사)의・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이사장 귀하					

코로나-19(COVID-19)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환불 신청서

◎ 성명 :					
◎ 생년월일 :					
◎ 수험번호 :					
◎ 연락처 :					
상기 본인은 코로나-19 확진자 수 없어 응시를 취소하며, 응시료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.					
첨부: 1. 확진자 증빙 서류(시험을 2. 자가격리자 통지서(관할	, ,	, , ,			
2	2021년 8월	일			
신청인:		(서명)			
(사)의・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이사장 귀하					

첨부4>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응시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

■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

- ∘ 자가격리 장소(집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80 동급 이상)를 착용하며, 외 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∘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,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(대중교통 이용 금지).
-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.
 -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
 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 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- ◦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·물을 준비해주세요.
- ∘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.
-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- ◦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.
- ∘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.
- 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■ 시험에 참여하는 자기격리대상자의 보호재운전자 준수시항

- ∘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,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 - 보호자(운전자)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, 자 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의 대각선)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.
 - ∘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,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.
 - ∘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는 자 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.
 -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 - ∘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, 손소독제를 이용 하여 손위생을 합니다.
 - ◦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.
 - ∘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 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.
 - ∘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(손잡이 등)은 소독하여 줍니다.
-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, 자가격리 장소(집)에 하차 후 1회,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 시하도록 합니다.